

붙임.

## 기지시설물 및 조경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

### 제1조 (용역업무의 수행)

계약자는 계약 체결전 필요서류(유지관리계획서, 인력운영(자격증빙서류), 보안서약서 등)을 제출하고, 관리소장에게 인력현황을 확인하여 결원발생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야하며,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 (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)

- ① 계약자는 용역착수 전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현황 및 점검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인수인계서를 작성, 제출해야 한다.
- ② 계약자는 차기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(착수지연 등)은 회사가 정산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종업원에 대한 책임)

계약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, 신원,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,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### 제4조 (관리소장의 임무)

관리소장은 직원들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하며,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의 요청사항을 계약자에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계약자와 회사의 업무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이행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(결원 보충)

계약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
#### 제6조 (직원의 복장)

계약자는 종사자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, 소속업체 이름이 명기된 표시를 왼쪽가슴에 부착토록하며, 동복, 춘추복, 하복, 작업복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 (관계법령의 준수)

계약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(과업지시서 참조)

#### 제8조 (적정임금의 보장)

- ① 계약자는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를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.
- ②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⑤ 계약자는 고용노동부 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(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)

직원 결원(결근포함)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(결근포함)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.

#### 제10조 (계약기간 연장)

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